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137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종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성

변 론 종 결 2021. 7. 13.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7. 1. 접수 제448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C가 대출 규정 등에 위반하여 5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C에 대하여 306,751,55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데, 채무초과상태인 C가 2015. 6. 17.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

별지